

소방청 일반임기제 (4·5호) 채용시험 공고

소방청 일반임기제(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소방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2명)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	담당예정업무	채용기간
일반임기제 4호 (기술서기관)	1명	119대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 의료지도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 구급 정책 수립·집행 지원 	2년 (최대 5년*)
일반임기제 5호 (의무사무관)	1명	119구급과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 의료지도 ○ 일반인 등 응급의료상담 ○ 구급상황관리 업무 자문 및 지원 ○ 기타 구급지도의사 업무 등 	2년 (최대 5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장가능

2. 응시자격기준

가. 응시자격요건

임용직급	주요 자격 및 경력 요건
일반임기제 4호 (기술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센터 또는 외상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일반임기제 5호 (의무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센터 또는 외상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나. 공통기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2)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3) 응시연령: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4)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다.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일반임기제 4호

응시코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01	보건의료	의무	기술서기관(일반의무)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의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이송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지원 - 영상(스마트) 의료지도 추진 - Heli EMS 등 광역이송 지원관리 ○ 응급의료 상담·안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응급의료 상담·안내(전문 의료) - 시·도 응급의료 상담·안내 적절성 평가 ○ 구급 정책 수립·집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 의료지도 종합계획 시행 지원평가 - 전국 의료지도의사 협의회 운영 -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 구급품질 개발·관리 등 지원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전문 지식 ○ 응급의료상담·안내 및 관리 관련 지식 ○ 응급의료기관 협력 및 구급품질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 분야 : 응급의료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센터 또는 외상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2) 일반임기제 5호

응시코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02	보건의료	의무	의무사무관(일반의무)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 (영상)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일반인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에 관한 사항 ○ 구급상황관리요원(업무) 지도 및 자문,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상의 업무 ○ 그 외 구급상황관리 및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공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학 및 구급의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 ○ 119구급 업무와 상황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 ○ 119구급대원 의료지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 분야 : 응급의료	
	자격증	○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요건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라. 응시자격요건 서류전형 기준

<공통>

- ①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함
- ②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③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경력의 범위>

- ① '경력' 인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인정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②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1)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3)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4)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5)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3. 관련근거

- 가. 「국가공무원법」
- 나. 「공무원임용령」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 라. 「공무원임용규칙」
-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1) 임용예정 직위별로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 2)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가.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별 문자 발송

구 분	시험일정	장소/방법
시험공고	2023. 4. 7.(금) ~ 4. 19.(수)	소방청 119고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3. 4. 10.(월) ~ 4. 19.(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1차 시험 (서류전형)	2023. 4. 26.(수)	소방청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개별 문자 발송)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2023. 4. 28.(금)	소방청 119고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제2차 시험 (면접)	2023. 5. 9.(화)	소방청
채용점검위원회	2023. 5. 11.(목)	소방청
합격자발표	2023. 5. 17.(수)	소방청 119고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임용	2023. 5월 말	예정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3. 4. 10.(월)~4. 19.(수) ※ 09:00~ 18:00[점심(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일반임기제 원서접수 담당자 앞 / 우 30127

※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 7289(응시자격, 서류안내)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 1)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2)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를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됨
- 3)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4)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력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도 수수료 제외)
-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사항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 취소)
-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서류제출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번역공증서 포함)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것만 인정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① 응시원서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첨부
- ② 이력서
- ③ 자기소개서
- ④ 직무수행계획서
-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⑨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⑩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이수증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를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제출

9. 신분 및 보수

- 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신분 유지
-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범위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	85,843	48,792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	64,509	기술서기관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라.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마.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직무관련 사항: 소방청 구급과(☎ 044-205-7632)

2) 채용관련 사항: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 문의전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일반임기제 5호 (의무사무관)	의무

작성 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순서대로 제출

목록	제출 여부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이력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자기소개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차 정보제공 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 과정」 이수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3. .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일반임기제(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의무사무관)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매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이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뒷장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기재
- ③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을 기재
- ④ 응시요건: 공고문의 ‘2.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작성

나. 응시자격

-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같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3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 채용 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3. . . 작 성 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시 험 명	2022년 하반기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지역		응시번호	
분야(계급)		성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이메일주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